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8 선고 2020가단30031 판결 [공사대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서정욱

피 고 1. B

2. C

소송대리인 B

변 론 종 결 2021. 4. 6.

판 결 선 고 2021. 5. 18.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70,499,995원 및 그중 3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31.부터, 2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 22.부터, 1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10.부터, 4,499,995원에 대하여는 2020. 10. 29.부터 각 2021. 5.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피고 B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699,994원 및 그중 3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30.부터, 2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 22.부터, 1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1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5,699,99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변경된 청구취지’ 기재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은 ‘변경된 청구원인’ 해당 부분 기재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2019. 12. 28.경 서울 중구 D 소재 건물(이하 ‘건물’은 이 건물을 가리킨다) 1, 2층 철골공사 및 내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9. 12. 28. ~ 2020. 1. 31.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C은 피고 B의 딸이자 ‘E’의 사업자등록 상 명의인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피고 C 명의의 은행계좌에 2019. 12. 31. 계약금 3,300만 원, 2020. 1. 22. 1차 중도금 2,200만 원, 2020. 3. 10. 2차 중도금 1,100만 원, 합계 6,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각 무렵 피고 C(E) 명의로 해당 금액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다. 피고 B는 2020. 4. 21. 원고에게 ‘2020. 4. 30.까지 건물 1층 공사를, 2020. 5. 15.까지 건물 2층 공사를 각 완공하고, 기일을 어겼을 경우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20. 5. 18. 피고들에게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과 공사대금의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상회복 부분

-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2020. 5. 18.자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계약해지통지에 의하여 그 무렵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합계 6,600만 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한편 피고 B는 '원고의 내용을 인정한다.'면서(2020. 11. 18.자 요약쟁점정리서면)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나, 공사를 한 사실은 위 피고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원고는 피고 B가 건물 2층 공사는 전혀 하지 않았고, 건물 1층 공사는 일부만을 부실하게 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손해배상 부분

-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 B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 원고는 피고 B의 시공 잘못과 늘어난 공사기간으로 인하여 사무실을 빌리고 기계를 보관하면서 사무실 차임 및 기계 보관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액이 사무실 차임 합계 21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 2020. 1. 1.부터 2020. 7. 31.경까지 7개월), 보관료 합계 3,599,994원(= 보관료 월 599,999원 × 2020. 1. 16.자부터 2020. 6. 15.자까지 6개월), 총합계 5,699,994원(= 210만 원 + 3,599,994원)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무실 차임은 3개월분, 기계 보관료는 2개월분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바, 위 각 차임 및 보관료의 금액, 손해발생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그 기간에 관하여만 다투는 취지로 보인다.
- 3) 이 사건 공사기간이 당초 1달 남짓으로 2020. 1. 31. 완공이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가 2020. 5. 18.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비추어 원고가 다른 업체를 통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던 시점은 다른 업체를 수배하는 기간을 포함하더라도 2020. 6. 30.경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된 기간 중 피고 B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은 2020. 2. 1.부터 2020. 6. 30.까지 5개월간이 되고, 원고의 손해액을 계산하면 4,499,995원[= 5개월 × (차임 월 30만 원 + 599,999원)]이 되므로, 피고 B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한편 원고가 2020. 5. 18.에 이르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거나 피고 B가 2020. 4. 21. 원고에게 각서를 작성해준 사실만으로는 이로써 그때까지 발생한 위 손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B의 책임을 면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에 관한 피고 B의 책임을 부인할만한 주장이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다. 소 결

따라서 피고 B는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70,499,995원(= 66,000,000원 + 4,499,995원) 및 그중 계약금 3,3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돈을 받은 2019. 12. 31.부터, 1차 중도금 2,2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돈을 받은 2020. 1. 22.부터, 2차 중도금 1,1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돈을 받은 2020. 3. 10.부터, 4,499,995원에 대하여는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10. 29.부터 각 피고 B가 그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5.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피고 B의 동업자로서, 예비적으로는 명의대여자로서, 피고 B와 연대하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동업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여기에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B가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B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고 원고에게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시공자란에 “E B”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계약서에 피고 C의 이름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실에 원고가 제1차 변론기일에 이 법정에서 한 진술(원고가 피고 B로부터 ‘사업자등록이 피고 C 명의로 되어 있어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이나 공사대금의 지급이 피고 C 명의로 이루어질 뿐 피고 B가 실질적으로 공사를 한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취지)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 B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피고 C 명의 은행계좌에 공사대금을 입금하고 위 피고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여기에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아